

第137回(定例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第4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(案)	1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	5面
2.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(案)	8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	12面
3. 2003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(案)	15面

1.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안 번호	9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11. 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일·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방법원의 직급변경으로 사문화된 방법수당을 삭제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원자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46조(실비보상 등)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함(안 제1조)
- 나. 의료업무등의 수당 300,000원 인상(안 제2조 [별표]제1호 및 제2호)
- 다. 사문화된 방법수당 삭제(안 제3조)
- 라. 종전의 일·숙직비 지급은 국가기준의 확인적 지급으로 실비보상 취지에서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실비소요액을 반영하는 숙직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 - 1인당 회 10,000원(기존) ⇒ 1인당 1회 35,000원(변경)
 - 실 비 산 정
 - 식사비 (숙직자 - 저녁,아침 / 일직자 - 점심) 및 간식비
 - 목욕비, 교통비 및 긴급 현장확인시 등

3. 개정근거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46조 (실비보상 등)

나.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17쪽 (공무원 일·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)

다.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181(2003.6.14)호 및 서울시 인사 12540-2102(2003.6.23) “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계획”

4. 예산수반사항 : 200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(숙직수당), 인상반영(의료수당)

5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(이하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를 “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”라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당직수당) ①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인당 1회 35,000원으로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 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”

부 칙

이 조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4급	월 909,000원	월 854,000원
5급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【별표 2】

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등 급 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
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
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
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
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

비고 :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